

정기(기동점검) 점검 결과보고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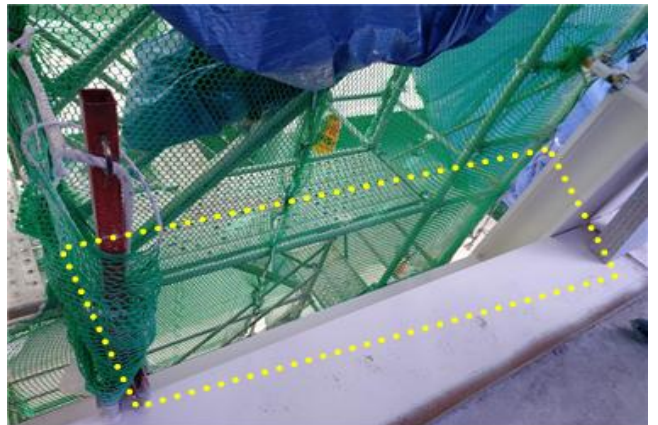
[세운상가군 공공공간 조성공사(2단계)[장기1차]]

- 점검일시 : 2020.10.13 (화)
- 점검결과
- ◆ 점검자 : 이상현

○ 추락재해 예방(건축부)

- 서측 신설데크 설치구간은 일부 추락 위험부가 있으니 난간을 설치하기 바람
공정상 난간 설치가 어려운 경우 접근 금지띠 등을 활용하여 근로자가 추락 위험부임을 인지할 수 있게 조치하기 바람

※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제42조(추락의 방지)



○ 가설통로 안전(건축부)

- 서측 신설데크 구간은 데크와 워킹타워 사이 간격으로 근로자 발빠짐 및 추락 우려가 있으므로 안전한 통로 확보하기 바람

※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제22조(통로의 설치)



○ 낙하·비래 재해 예방(건축부)

- 인현상가구간 워킹타워는 계단참 부분에 수직 방호망 또는 발끝막이 등을 설치하여 낙하물 방지 조치하기 바람
- ※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제14조(낙하물에 의한 위험의 방지)



○ 감전재해 예방(건축부)

- 분전반은 관리책임자 이름과 연락처를 표기하기 바람
- 주변에 소화기를 비치하여 화재 예방하기 바람
- ※ 건설안전 기본지침 공통-016(분전반)



○ 기계기구 안전(건축부)

- 보 치핑작업에 사용하고 있는 브레카는 반입전 및 월 정기점검이 누락되었으므로 점검하고 그 결과를 부착하여 관리하기 바람
- ※ 건설안전 기본지침 공통-028(위험기계? 기구 안전검사)



○ 보건 관리(건축부)

- 보 커팅 및 치핑 작업자들은 소음 및 분진 재해 예방을 위하여 귀마개 및 마스크를 착용하여 작업하도록 교육 관리하기 바람
- ※ 건설안전 기본지침 공통-043(개인보호구)

